

## 자유무역지역 보관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침

### - 국외반출 자유무역지역 보관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등 -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어 물품의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외국법인이 물류업체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된 물품을 국외 반출(수출)하는 경우 한국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고, 상대국 세관 검증 대응이 어려워 자유무역협정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관세청은 일부 자유무역지역 보관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고 원산지 심사 기준을 마련한 자유무역지역 보관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침을 4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I. 목적

- 이 지침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II. 적용 대상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거주자 등이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sup>1)</sup>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하는 때에 이 지침을 적용함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비거주자등이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 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

- ① 국내사업자와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받을 것
- ②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할 것
- ③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입주기업체에게 인도할 것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

② - ④ 생략

### III. 주요 내용

#### 1.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심사

- 1)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또는 생산자는 이 지침 적용 대상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이하 “발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2)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발급기관장에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sup>2)</sup>에 따른 서류와 함께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
  - ①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의3 서식)
  - ② 생산자와 비거주자등간의 송품장, 거래계약서 등 거래 증빙서류
  - ③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비거주자 등의 물품에 대한 보관·국외반출 등 취급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④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21조제2항제1호(반입내역) 및 제2호(반출내역)에 따른 재고기록 등 반출입 물품간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 3) **상기 III. 1. 2). ①부터 ③까지의 서류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발급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고 이후에는 최초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와 기존에 제출된 서류의 명칭·일련번호 등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증빙서류 예시 〉

- ①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신고한 물품을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III. 1. 2). ①의 서류
- ② 생산자와 비거주자등간 단일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물품을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III. 1. 2). ②의 서류
- ③ 비거주자 등의 모든 물품에 대한 취급 권한을 가진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지속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III. 1. 2). ③의 서류

####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반입신고 대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물품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이하 생략)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제12조에 따른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서류
- 
-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해당 물품이 제4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의 제출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4) 발급기관장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제1항<sup>3)</sup>에 따른 심사 이외에, 이 지침 III. 1. 2).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출입 신고된 물품 간 동일성 여부\* 등을 확인
  - \* 품명, 규격, 수량, 중량, 품목번호 등
- 5)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발급기한, 소급발급, 보정, 현지 확인, 재발급 및 정정발급 등 절차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따름

## 2. 자율증명 절차

- 1)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또는 생산자가 이 지침 적용 대상 물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sup>4)</sup>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 III.1.2).의 증빙서류에 기초하여야 함
- 2)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관리 등 원산지증명서의 작성과 관련한 그 밖의 절차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름

## 3. 유의사항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작성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또는 생산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 제출해야 하며, 같은 법 제4장에 따른 원산지검증과 법 제44조 등에 따른 처벌의 대상임

###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신청서류 심사)

①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3. 규칙 제4조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4.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과 일치하는지 여부
5.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제출 여부

###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①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1. 작성번호 및 작성일
2. 수출입신고번호 및 수출입신고 수리일(생산자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 품명·품목번호(6단위)·수량·금액 및 원산지
4.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사항
5. 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 IV. 시행일자

- 2023년 4월 3일부터 작성·발급 신청되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적용

###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업무 처리 지침(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I Contact



차재영 관세사

T 02-6929-3464  
E jycha@esein.co.kr



조민지 관세사

T 02-6011-3098  
E mjcho@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3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